대법원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

보도자료		2024. 8. 19.
담당부서	인사총괄심의관실	공보관실 02-3480-1451
담당자	인사담당관 유창우 (02-3480-1571)	

2025년도 전담법관 임용분야 확대

▣ 대법원은 2024. 8. 19. 2025년도 전담법관 임용 계획을 공고하였음

▣ 전담법관 제도는 경험과 연륜이 풍부한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하여 재판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법조일원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2년 도입되었음

▣ 올해 실시되는 2025년도 전담법관 임용절차에서는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고 법관 임용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용분야를 확대하여 형사단독 전담법관도 선발할 계획임

- 전담법관은 최초 민사소액사건을 전담하였으나, 법원 내외부의 긍정적 평가에 따라 2015년부터 민사단독 전반으로 선발분야를 확대한 바 있고, 2025년부터 형사단독 전담법관도 임용 예정임
- 형사단독 전담법관은 임용 초기에는 우선 정식재판청구사건을 담당하되, 일정 기간 근무 후에는 일반 형사단독사건도 담당할 수 있을 예정임

▣ 민·형사 각 분야에서 풍부한 경륜을 쌓은 훌륭한 법조인이 전담법관으로 임용되어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사건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실한 재판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함

▣ 2025년도 전담법관 임용절차의 구체적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소식' 란 및 법관임용 홈페이지(judges.scour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보도자료		2024. 8. 19.
담당부서	인사총괄심의관실	공보관실 02-3480-1451
담당자	인사담당관 유창우 (02-3480-1571)	

1. 현행 법관임용절차 개관

▣ 현행 법관임용절차는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 있음

-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법조경력 5년 이상
- 전담법관 임용절차: 법조경력 20년 이상

▣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2. 전담법관 제도 도입 및 시행경과

▣ 전담법관 제도 도입

-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2012년 5월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법조경력자의 법관 임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법조일원화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기 중 특정 재판만을 전담하는 법관을 재야 법조경력자 중에서 임용하는 '전담법관제도'의 도입을 건의하였음
-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2년 하반기 최초로 전담법관 임용절차를 진행하고, 2013. 2. 신임 전담법관 3명을 임용하였음

▣ 전담법관 제도 시행경과

- 전담법관 제도가 시행된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총 29명의 전담법관이 임용되었고, 현재 20명의 전담법관이 각급 법원에서 풍부한 경험과 연륜을 살려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민사단독 또는 민사소액 사건을 담당하고 있음
- 전담법관 제도 도입 초기인 2013, 2014년에는 민사소액 전담법관만을 임용하였으나, 제도 운영에 대한 법원 내외부의 긍정적 평가에 따라 2015년부터 선발분야를 확대하여 민사단독 전담법관도 임용함
- 또한 초기에는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을 대상으로 선발하였으나, 법관임용에서 요구되는 최소 법조경력이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상향됨에 따라 2019년부

터는 전담법관 지원 자격을 법조경력 20년 이상으로 상향하였음

3. 2025년 전담법관 임용절차 개시 및 임용분야 확대

▣ 대법원은 2024. 8. 19. 2025년 전담법관 임용 계획을 공고함

● 2025년 전담법관 임용 세부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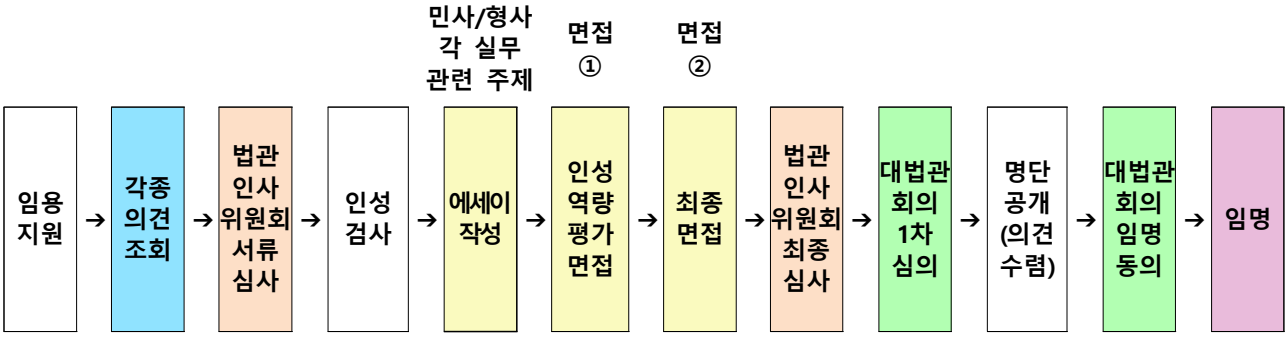

● 임용절차 진행 일정(예정)

- 임용 지원: 2024. 9. 2.(월) ~ 9. 20.(금)
- 법관인사위원회 서류심사: 2024. 10. 하순경
- 인성검사, 에세이 작성 및 인성역량 평가면접: 2024. 11. 중순경
- 최종면접: 2024. 11. 하순경
- 법관인사위원회 최종심사: 2024. 12. 초순경
-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2025. 1. 중순경

▣ 임용분야 확대

● 경륜이 풍부한 법관이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형사사건을 담당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입장을 두루 경청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실한 재판을 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2025년부터 형사단독(정식재판청구사건 포함) 전담법관**

도 임용할 예정임

- 형사단독 전담법관은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형사단독사건(정식재판청구사건 포함)을 전담할 예정임. 사건의 특성과 업무부담 등 사정을 고려하여 임용 초기에는 우선 정식재판청구사건을 담당하되, 일정 기간 근무 후에는 본인의 희망, 보임 법원의 재판부 구성 현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 형사단독사건도 담당할 수 있을 예정임